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,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구체화(안 제23조제2항제3호)

-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

나.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명확화(안 제29조)

-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차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~ 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있는 자”를 각각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해양환경, 수질환경 또는 식품위생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
제29조제4항 본문 중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”를 “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”로, “기한 내에”를 “기한까지”로,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생략)	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
1. 해양조사산업기사, 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,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사람
2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에서 해양심층수학, 해양학, 수산학, 환경공학, 화학, 미생물학,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·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사람
3. 해양환경행정,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	3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해양환경, 수질환경 또는 식품위생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
제29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 등)	제29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<u>납부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</u> 인하여 그 <u>기한 내에</u>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<u>납부하여야</u> 한다. ⑤ (생략)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납부해야</u> -----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----- - <u>기한까지</u> ----- ----- ----- <u>납부해야</u> ----- -.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41